

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 제9조(중앙안전관리위원회) ①~④(생략)

- ⑤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[직무대행]

공무원의 직급 배정을 변경하지 않은 채 다른 직급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. 직무대행은 갑작스런 결원을 보충하기 위한 잠정적인 임용의 방법이다. 직무대행은 주로 상위 직급(職級)에 결원이 생겼거나 상급자가 사고로 인하여 당분간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바로 아래의 하급자로 하여금 그 직무를 임시로 대행하게 하는 방법으로 쓰인다.

[직무대행과 직무대리]

명확히 정립된 것이 없어 뭐라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지만 직무대행은 권한의 완전 위임에 가까운 용례로 쓰이고 직무대리는 특정 직무만을 위임받는단 뉘앙스가 강하다

「민방위기본법」 제21조(민방위대의 지휘·감독)

- ① **민방위대**는 해당 민방위대장이 지휘한다.

제27조(지휘권의 대리) 법제21조제1항에 따른 민방위대의 지휘권은 민방위대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 때에는 부대장이 행사하고, 부대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 때에는 편제순서에 따라 간부대원이 행사한다.

☞ 민방위대

- * 지역민방위대 : 통·리민방위대(통·리장), 민방위기술지원대(시장·군수·구청장)
- * 직장민방위대 : 직장의 장(또는 직장의 장이 지정한 민방위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)

[지휘권]

지휘권이 계급과 직책에 의해서 예하부대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행사하는 권한. 지휘는 가용자원의 효율적인 사용과 부여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군대의 운용, 편성, 지시, 협조 및 통제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따르며 부하 개개인의 건강, 복지, 사기 및 군기에 대한 책임도 포함됨

[네이버 지식백과] 지휘권 [指揮權, Command Authority] (군사용어사전, 2012. 5. 10., 이태규)

[법정대리]

직무대리의 한 종류로 기관의 장 또는 직원의 결원, 출장, 사고가 있을 때 직무대리 규정에서 미리 정하여 놓은 자가 자동적으로 대리인이 되어 피대리인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.